

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
|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|
| 의 회 사 무 국       |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 
불출석·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 
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4. . .    |
| 발 의 자 | 김근한 의원 외 13인 |

#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불출석·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4. . .

발 의 자 : 김근한·강승수·김낙관·김민성  
김재우·김춘남·소진혁·신용하  
양진오·이상호·이지연·장미경  
정지원·추은희 의원 (14명)

## 1. 제안이유

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과태료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위반 횟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 차등 부과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불출석·증언거부  
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불출석·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  
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, 제2조제2호를 위반  
한 자는 300만원,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 
다”를 “별표와 같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부과기준) 제2조에 의한 과<br>태료 부과 기준은 <u>제2조제1호를<br/>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, 제2<br/>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<br/>원,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<br/>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| 제3조(부과기준) -----<br>----- <u>별표와 같다.</u> |

## 【별표】

### 과태료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| 위 반 행 위 별              | 금 액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|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|
|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   |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|
|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   |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|
| 선서 또는 증언 거부            | 100만원 미만          |

※ 비고 :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

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.
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